

전 세계 특허청 'Made in Korea' 지재권 e-러닝 콘텐츠 활용한다

한 국이 만든 지재권 e-러닝 콘텐츠가 전 세계 특허청이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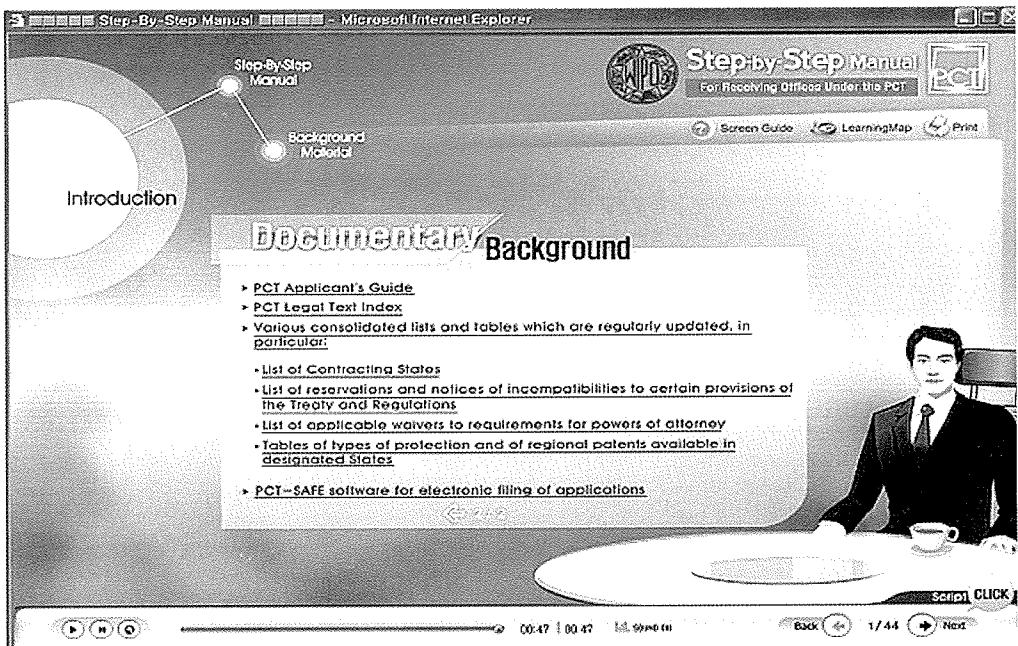
특허청은 UN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요청으로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의 출원행정 절차에 관한 교육자료인 지재권 e-러닝 콘텐츠의 개발을 완료하고, WIPO를 통해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된다고 밝혔다.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협력조약. 특허 또는 실용신

안의 해외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2006년 7월 현재 PCT 가입국은 13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PCT Step-by-Step 매뉴얼” 이라고 불리는 본 콘텐츠는 각국 특허청이 PCT를 통해 제출받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서에 대하여 접수, 방식심사 및 출원서 관리 등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콘텐츠는 기존 교육방식인 책자에 의

〈PCT Step-by-Step 매뉴얼 콘텐츠 화면〉



한 전달방식에서 소리, 애니메이션 그리고 동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공되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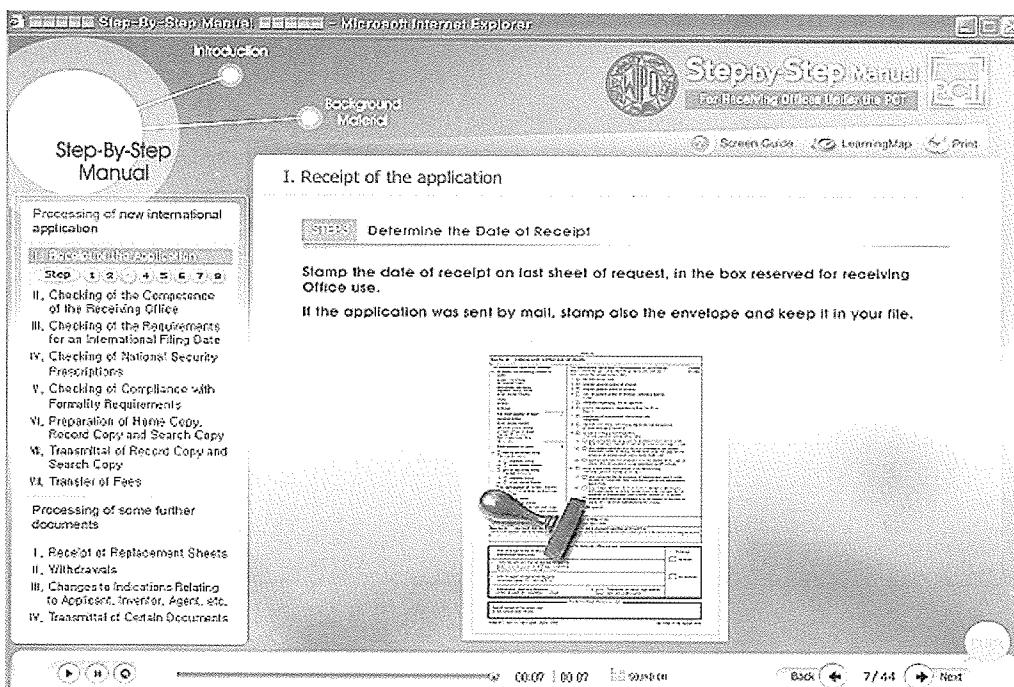
WIPO는 이미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와 개발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현재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는 본 콘텐츠를 스페인어 및 프랑스어 등으로 확대 개발을 한국 특허청에 의뢰한 상태이다.

한편, 본 사업은 WIPO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개발기술 및 지재권 e-러닝 교육 경험을 인정받아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을 담

당하였으며, 개발된 콘텐츠는 WIPO를 통해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재권 e-러닝 분야의 앞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재권 e-러닝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WIPO와의 전략적 협력체제를 갖추어 “Made in Korea” 디지털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PCT Step-by-Step 매뉴얼 콘텐츠 화면〉



모방상표의 출원은 이제 그만!

상표법 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는 색채만으로 된 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 상표법상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의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는 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도록 상표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정의가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인 형태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 보호되고 있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통상적인 상표 외에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모든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 대상 내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표제도와 상품거래시장의 연관성이 강화되고 기업 등의 상표선택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모방상표가 더 이상 받을 불일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보다 먼저 출원을 하면 선출원주의(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등록받는 것이 가능하였고,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의 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나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모방상표를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등의 폐단도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면, 이를 모방한 제3자의 모방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선출원주의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행위를 제도적으

로 방지토록 하였다. 나아가 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의 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제3자의 불공정한 기대이익의 박탈은 물론, 상표의 미등록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줄이고,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받은 자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개정안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방상표의 등록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국제교역규모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개

정안의 내용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 및 상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날로 강조되고, 시장개방의 확대·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을 통한 정보 공유의 동시화 등을 통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는 거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끝으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현재 출원 공고일부터 30일로 되어 있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표심사의 내실화와 상표분쟁의 사전예방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상에 이런일이

**발명
365**

베 디 스 케 이 프

사람이 깊은 물속을 탐험하려면 엄청난 압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잠수복을 입어도 사람은 1백미터 이상 잠수할 수 없다.

1930년대 초 미국의 생물학자 C.W. 비비는 석영으로 된 창이 달린 두꺼운 강철로 잠수구(潛水球)를 고안해냈다. 이 잠수구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바닷속 깊숙이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장치를 '베디스피어'라고 일컬었다.

1934년 비비는 바다 속 900미터까지 잠수했고, 동료인 벤튼은 1948년, 베디스피어를 개량해 1,350미터까지 잠수했다. 그러나 이 잠수구들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잠수구에 가솔린 기구를 매단 장치를 고안하여 잠수구가 떠오르거나, 가라앉고, 이동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베디스 케이프(심해조사용 잠수정)이다.<王>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 출원 이후에 출원인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출원의 내용이 잘못되어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전액 되돌려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출원시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출원후 1개월 이내에 특허 등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 기술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시에 납부한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

은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2006년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한 후 2007. 7. 1. 이후의 출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심사개시 전에 출원인이 불필요한 특허 등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게 되어 심사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특허 등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원인이 사정변경 등으로 스스로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에 대하여 전혀 반환받을 수 없는 현행제도와 달리 이미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배포

특허청은 최근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재권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피침해시 대응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31개소), 상공회의소

(71개소), 국공사립대학(215개소), KOTRA 본부 및 무역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미국 등 4개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절차, 피침해시 대응방안,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지식재산관련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해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특허넷시스템,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 인증 획득

특허청은 특허넷시스템(KIPONet)이 정부기관 최초로 IT분야 국제 품질인증 기준인 CMMI 레벨4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미국 SEI(카네기 멜론대학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품질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성숙도,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하는 국제공인 지표이다. CMMI 인증은 성숙도 수준에 따라 5개의 레벨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국내에서 CMMI 레벨4 이상을 받은 기관(사기업 포함)이 10여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인증이다.

특허청은 지난 2년간 특허넷시스템에 국제적인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지속적

인 품질개선 활동을 수행한 결과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SEI)로부터 CMMI 레벨4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내 정부기관 중 최초로 CMMI 레벨4를 획득하게 된 특허청은 특허청이 정보화분야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으며, 특허넷시스템이 높은 품질수준을 갖춘 글로벌시스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게 되어 향후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정보기획본부장은 “이번 CMMI 레벨4 인증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2008년 CMMI 레벨5 인증획득을 목표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특허넷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인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특허청의 해외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제작사업은 고객중심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허브(hub)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으로 단순한 책자의 발간과 배포에 그치지 않고 금년 8월 1일 개통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copi.kipo.go.kr/>) 자료실에 탑재하여 고객수

요에 특화된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한 없이 현지의 생생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2005년에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주요 침해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중국진출 및 진출예정 기업들에게 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금번 미국 등 4개국에 이어 연말까지 러시아, 대만 및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내년에는 가이드북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하여 인도, 유럽 및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

특허제도가 발명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권의 보호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자신의 보호범위를 치밀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유예(늦어도 출원공개 전(1년 6월)까지는 제출해야 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에 따라, 발명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게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기재요건이 외국의 기재요건과 달라 국제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되도록 외국의 기재요건과 일치시켜 국제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심사 실무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에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출원인으로서 구제적인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그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시에 거절되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이 모든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쉽게 알아 청구항별로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새로운 무효증거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물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은 금번 개정안을 '07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특허출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출원인의 특허권 획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07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연간 검색, 천만 건 시대 개막

우리나라 지재권 연간 검색건수, 사상 최초로 천만 건 돌파!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재권 무료 검색서비스인 KIPRIS를 통하여 검색한 연간 검색건수가 금년 10월까지 사상 최초로 천만 건을 돌파하여 천백만 건 수준에 이르렀고, 금년 말에는 천삼백만 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IPRIS 서비스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재권 검색건수는 2002년 200만 건 수준에서 2003년 550만 건, 2004년 680만 건에 이어 2005년에 910만 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올해 그 상승세가 급증하여 사상 최초로 연간 검색건수 천만 건을 돌파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인구 4.7명 당 한명¹⁾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검색한 것과 동일한 빈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재권 검색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로 이어지는 모든 지식재산 활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재권 검색건수의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지식재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임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

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온라인 지재권 검색활동은 국내 특허출원 19.9%, 국제특허출원 11.3%의 출원 증가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D 비용을 27.59% 절감시키고 그 기간을 26.18%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재권 출원 1% 증가는 국가 경제성장률 0.11%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 검색 천만 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향후 발명과 특허출원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창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연구 개발 활동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통계청 발표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47,289천명을 기준으로 함.